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251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민간협력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박은수	최규설	박성도	손정수	12/16 김병환	
협 조	예산담당 자치행정담당				김종호 위상복



2015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추진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I	추진개요	1
---	------	---

II	공모사업 추진계획	2
----	-----------	---

III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6
-----	---------------	---

IV	행정사항	7
----	------	---

붙임 : 2015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안) 8

2015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추진계획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제32조의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2014.12.31.자 폐지

□ 추진방향

-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
 - 구민과 함께 만드는 성북, 인권도시 성북 구현
 - 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 구정핵심·단체특화사업 추진
 - 생활안전, 인권개선, 복지향상 사업 등 우선지원
 - 자생력강화를 위한 자부담율강화 30%
- 사업집행 점검 및 보조금지원 효과 확인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보조금 집행내역 실시간 확인 및 이력관리 가능
 - 현장 모니터링 등 실사를 통한 보조금 지원효과 및 집행확인
- 공모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보조사업 완료후 매년 성과평가 후 평가결과 예산 편성에 반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경과 조치
 - 성과분석·종합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교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12월

○ 총 예 산 : 414백만원 [사업비 369백만원, 운영비 45백만원]

☞ 사업비 운영계획(안) : 369,000천원

- 공모사업 : 349,000천원 [사업공모 신청 접수후 심의]

- 수시사업 : 20,000천원 [수시공모 사업추진]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 원칙

※ 운영비 지원 :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Ⅱ 공모사업 추진계획

1 공모사업 유형

□ 역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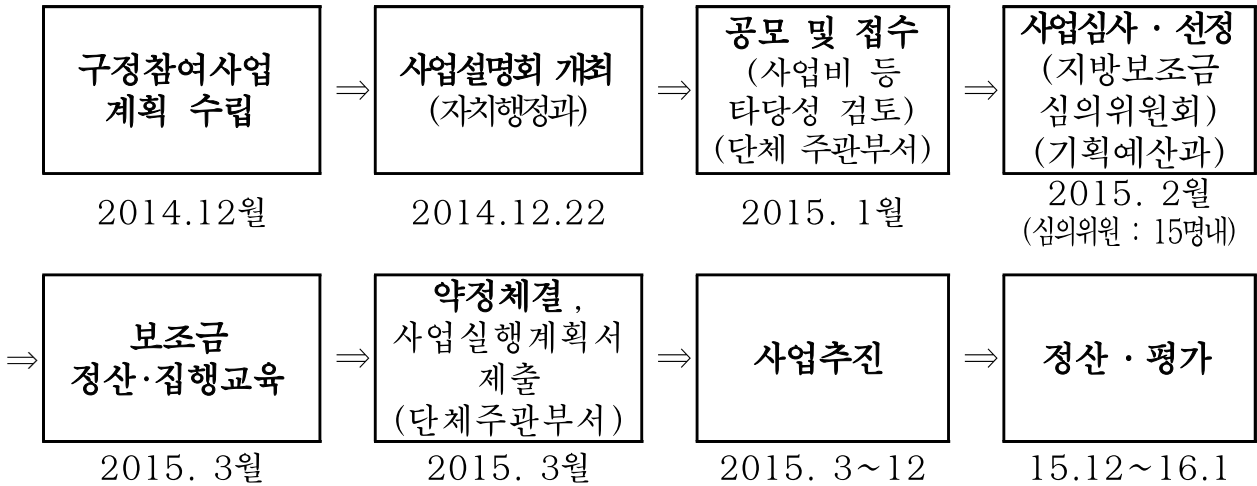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안전성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재난안전 분야 - 취약지순찰, 안전마을 조성 등 ○ 학교·교통안전 분야 - 어린이 등하교, 어린이시설물 점검 등 ○ 여성안전 분야 - 안심귀가, 야간지역 순찰 등

□ 단체 제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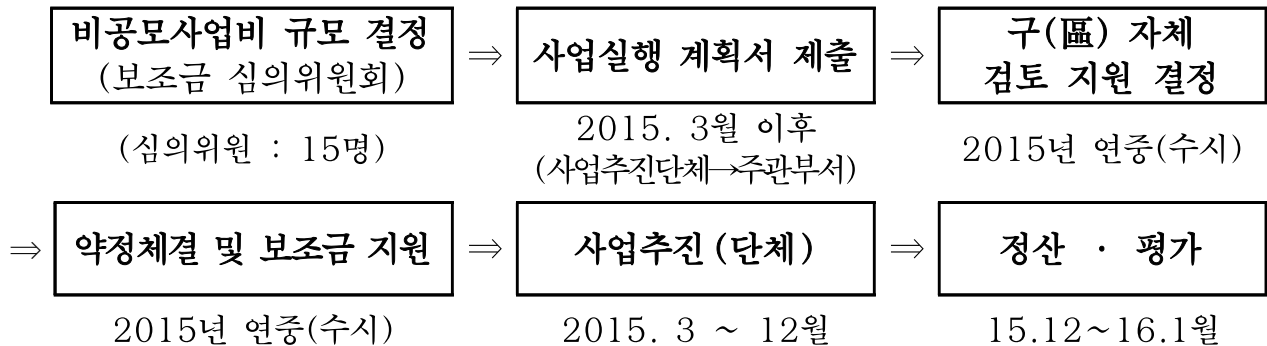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區 지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성북구현 (복지협의체 협력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등) ○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어린이 교육·문화 활동지원 등) ○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여성 사회적 참여·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보행친화도시 조성(단체주도 걷기행사, 걷기동아리 운영 등) ○ 녹색성북 구현 및 선진교통문화정착 (자원재활용 등)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구정발전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p>※ 문화,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등 각 분야</p>

2 심사 및 선정방법

① 공모분야(연1회)



② 수시지원 사업분야



③ 지원사업 선정방법 및 규모 결정

→ 공모사업(연1회)과 수시공모사업으로 구분 추진

- 공모사업 : 사업유형별로 연 1회 공모절차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지원
 - 수시지원사업(수시모집사업): 일정액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정 현안과제 및 긴급사업 등에 대해 구(區)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및 사업추진단체를 결정하여 사업비 지원
 - 운영비 지원 :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 3단체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 등 감안 적정 배분(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 ※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3 **구청참여사업 보조금 지원심의**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목적 : 2015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규모 결정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심의위원 :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15인 이내 (공무원위원 1/4 이내)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 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 임기 : 당연직 재직기간, 위촉직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

심의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년주기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사업 심사방법(안)

- 행정심사(2015.1) : 주관부서 검토(1차) → 총괄부서 검토(2차)
 -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자부담비율 30%이상 부담 등 행정적 판단사항 검토
 - 측정항목별 세부평가지표를 통한 객관적 단체행정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2015.2) : 전체위원회 집합심사
 - 사업신청서, 실적서 및 심의조서 사전배부를 통한 개별심사
 - 평가배점 : 사업주관부서 평가 30% + 심의위원회 평가 70%
 - 심의위원 점수와 단체행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분포에 따른 등급화관리로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

□ 사업 심의기준

- 관계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청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지역사회기여도·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사업비 외 단체운영경비를 자체 충당 가능 여부(자부담 30%이상 부담)
-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회원 및 사업의 중복여부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활동실적 등

□ 전체평가항목별 배점표(행정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주관
	100점		
행정평가 (17개 항목)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및 미래 경쟁력 평가 ○ 과거 성과 평가 	사업주관 부서
역량평가 (9개 항목)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역량에 관한 평가(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 단체의 창의성과 개발성 - 최근 공익활동 실적 ○ 사업내용 평가(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독창성 - 사업의 경제성, 파급효과 - 사회문제해결과 주민욕구충족도 ○ 신청예산에 대한 내용평가(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지방 보조금 심의회

※ 세부내용은 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방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Ⅲ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 보조금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에서 단체주관부서로 통보
- 단체주관부서에서 지원대상단체와 사업추진 약정 체결
- 지원대상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체주관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 신규신청 사회단체 신청서 처리방법

- 자치행정과에서 접수 후 주관부서 분류처리
- 사회단체 주관부서 분류기준(순위대로 순차적 적용)
 - 1순위 : 단체설립 취지 또는 회칙 · 정관 등에 따라 분류
 - 2순위 : 신청사업에 따른 분류
 - 3순위 :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하여 다수 주관부서로 지정

□ 보조금 정산방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으로 확정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집행시 단체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취지에 맞게 보조금 제도 전반적 개선(2014.5.28.공포)
 - 구정참여사업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심의위원회 변경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2014.12.31.자 폐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2016년 변경
 - 사업비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 사업부서의 관련조례 검토 및 개정 필요
 - 운영비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예산 총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등 결정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사업기준
 - 2015년중 조례개정하여 보조금관리조례 별표로 규정 2016년 시행

IV 행정사항

2015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홍보 : 홍보담당관 및 동(洞)

- 구·동 게시판,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12. 22(월) 15:00(예정)
- 장 소 : 4층 성북아트홀
- 대 상 : 각 부서 단체담당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 또는 실무자
- 내 용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2014년도 사업비 정산방법 설명

붙 임 : 2015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안) 1부. 끝.

2015년 사회단체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사회단체와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정참여사업을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규모 : 2개 유형 [사업유형별 교차지원 불가]

역점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성북안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재난안전 분야 - 취약지순찰, 안전마을 조성 등 학교·교통안전 분야 - 어린이 등하교, 어린이시설물 점검 등 여성안전 분야 - 안심귀가, 야간지역 순찰 등

단체 제안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區 지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성북구현 (복지협의체 협력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교육·문화 활동지원 등)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여성 사회적 참여·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 (단체주도 걷기행사, 걷기동아리 운영 등) 녹색성북 구현 및 선진교통문화정착 (자원재활용 등)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구정발전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 문화,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등 각 분야

2. 신청 자격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래요건을 갖춘 단체

- 주된 사무소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
-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는 일부를 자체충당(30%이상)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3.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

가. 단체운영비(지원근거 법령 조항 필히 기재)

- 대 상 :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
- **자부담 30% 원칙이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지원제외

나. 사업비

- 대상단체 :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자체결산서류)을 갖춘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자부담 30% 이상 원칙**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② 지원제외대상

- 학술·연구단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2014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
-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③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이 원칙

- 사업의 공익성, 파급의 효과, 경제성, 자부담율을 고려하여 타부분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업을 지원
- 단체 및 사업규모, 자부담액, 전년도 지원액,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지원
-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단,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구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지원결정 한 경우 등은 제외

4. 사업추진기간 : 2015. 3 ~ 12월

- 회계연도 종료일(2015. 12. 31) 이후는 보조금 예산 집행 불가

5. 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1. 5(월) ~ 2015. 1. 9(금) (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근무시간 내, 공휴일제외, 2015. 1. 9일 소인분까지 유효)
 - 기존 지원단체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규단체 : 방문접수
- 신청장소 (단체 주관부서에 신청)
 - 우) 136-706,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성북구청 ○○○과, 또는 자치행정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2015년도 지원사업계획서(서식 1,2)
 -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신청단체 전체, 서식 3)
 - 2014년도 정산보고서(2012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 서식 4)
 - 임원 및 회원명단(성북구민 50인 이상, 2014.11.30일기준)
 - 단체정관 또는 규약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수록한 파일 (단체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
 - ※ 신청서식은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배부 및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12. 22(월) 15:00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대 상 : 각 부서 단체담당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자
- 내 용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2014년도 사업비 정산방법 설명
 - ※ 2015년도 규정참여사업보조금 관련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각 사회단체별 2명 이상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7. 심사 및 통보

- 성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2015년 2월 중)
 -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이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심 사 : 구정발전기여도, 사업의타당성, 효과성,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 등
- 심사결과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교부 및 정산

- 참여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지원
 -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반기별 교부(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별로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접수 불가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지원결정 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2015. 3월예정)
- 개별사업 완료 후 수혜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산서류에 첨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문의 사항은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2241-4372)로 문의 바랍니다.